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1-17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4월 13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회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법령을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,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불신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,
-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최다선의원이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의2)
- 나.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로 부재 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11조제3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회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6, FAX : 820-1474, E-mail : kyong69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) 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.

1.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

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대행”을 “대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④ (생략)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